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310호(2002. 4. 4)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의 업무실적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2001. 8. 14, 법률 제6503호) 및 동법시행령(2002. 3. 18, 대통령령 제17545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대한 업무실적의 제출, 건축사협회의 업무실적증명서 발급 등 그 시행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만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건축사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축사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21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통보)

-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
-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과목란중 “배치계획”을 “대지계획”으로 하고, 동호 건축설계의 출제범위란중 “대지계획”을 “배치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건축사법 제2조제2호”를 “건축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중 “없음”을 “20,000원”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신고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의 신고 수수료에 관한 제1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